

2020년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1

회의개요

- 일시: 2020. 12. 3.(목) 14:02 ~ 14:24
- 장소: 비대면 화상회의(Google meet)
- 출석: 재적대의원 20명 중 11명
 - 의장(회장 직무대행자: 1): 강수립
 - 대의원(11): 전운기(서울), 하영재(부산), 정주동(대구), 강병석(전남), 김창수(경북), 노성진(경남), 오용덕(제주), 채희상(레이저), 이현승(유티미스트), 최홍석(J24), 김수범(카이트보딩)
- 상정안건
 - 전차회의록
 - 2020년도 정기 총회
 - 보고사항
 - 대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정회원지위확인청구 소송 결과
 - 임원 선임 결과
 - 회장 직무대행자 선정
 - 제19대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 심의사항
 - 정관 개정

2

논의결과(주요내용)

(개회선언: 14시 02분)

- 전차회의록
 - 사회자 초록 보고
 - 참석자 주요 발언: 없음
 - 논의 결론: 원안 접수

II. 보고사항

1. 대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정회원지위확인청구 소송 결과

가. 주요 내용

1) 판결 결과

가. 원고: 대한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맹

나. 피고: 대한체육회

다.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요트협회

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 판결

마. 주문: **상고 기각**

바.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

2) 위와 같이, 대한요트협회는 요트 종목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국제요트연맹과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유일한 단체임을 재확인

3) 현재 “윈드서핑협회” 가맹 공고 중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2. 임원 선임 결과

가. 주요 내용

1) 임원 선임 결과

연 번	직 위	성 명	선임 이사회	임기 시작	비 고
1	부회장	김창희	2020년도 제2차 이사회	2020. 3. 16.(월)	보선
2	부회장	김정철	2020년도 제2차 이사회	2020. 3. 16.(월)	보선
3	부회장	박궁호	2020년도 제5차 이사회	2020. 5. 29.(금)	보선

2) 대한요트협회 임원 현황

구 분	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현재	30	1	7	20	2

※ 대한요트협회 임원 명단

연 번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1	회장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2	부회장	강수립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3	부회장	박궁호	고려조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4	부회장	김창희	前) 국민생활체육 전국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처장
5	부회장	김관규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6	부회장	주봉노	위니스건설(주) 회장
7	부회장	김정철	부산광역시요트협회 부회장
8	부회장	김총희	전라북도요트협회 전무이사

연 번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9	이사	민기례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 이사
10	이사	박종열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가천CEO아카데미 원장
11	이사	정진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수석부위원장/윤리심판위원
12	이사	이재호	극동대학교 교수
13	이사	송영언	前) 스포츠동아 사장
14	이사	김종례	한국BBS중앙연맹 부총재
15	이사	엄용대	대구영남매일 국장
16	이사	안병태	군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17	이사	김용성	(주)에너지 대표
18	이사	김한섭	(주)용진 대표이사
19	이사	이미애	동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20	이사	이근우	인천대학교 상임감사
21	이사	여주호	관세법인 청솔 대표관세사
22	이사	이재형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체육과 교수
23	이사	조대용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겸임교수
24	이사	임진영	여수시요트협회 전무이사
25	이사	김정우	사립학교 교직원 행정실장
26	이사	천경과	일본 NKN(주) 대표이사
27	이사	김한울	(주)진아 총괄부장
28	이사	방은준	한국오팀티미스트요트협회 이사
29	행정감사	김순교	에스엔티(주) 대표이사
30	회계감사	이찬호	신아회계법인 대표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3. 회장 직무대행자 선정

가. 주요 내용

- 1) 유준상 회장의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과 동시에 직무정지
- 2) 우리 협회 정관 제21조제1항(“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의거 아래의 인원이 직무를 대행함

가) 직무대행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책
부회장	강수림	1947. 4. 13.	성심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나) 직무대행 권한

※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③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다) 직무대행 임무수행 시점: 2020. 11. 20. 10:00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4. 제19대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가. 주요 내용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가) 명단

연 번	구 분	직 위	성 명	직업 및 직책	비고
1	외부	위원	김용덕	(주) 씨티얼라이언스 대표	위원장 가능
2		위원	나도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3		위원	박종덕	(주)일등 대표	
4		위원	장보운	법무법인 제송 변호사	
5		위원	정관훈	前)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 의원	
6		위원	홍관의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팀장	
7	내부	위원	방은준	대한요트협회 국제이사	위원장 불가
8		위원	임진영	여수시요트협회 전무이사	

2)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수행 내용

※ 대한요트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 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선거인 수의 배정
2.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6. 선거운동 관리 및 위반행위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7.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논의 결론: 원안 접수

III. 심의사항

1. 정관 개정

가. 주요 내용

1) 개정 세부내용

- 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하여 회원종목단체 이사회 개최 어려움 등을 반영하여 체육회 정관 개정(안)에 따라 **이사회 화상개최 가능 조항 신설** *제15조
- 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 해당종목 임원이었던 자의 임원선임 제한 강화(**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년**) *제26조
- 다) 회원종목단체 선진화평가 시행 근거 조항 마련 *제47조의3
- **매년 회원종목단체 평가를 시행**하여 종목단체 지원기준 수립 등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존의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름

2) 대한요트협회 정관 개정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5조(이사회 소집) ①~⑥ “생략” <u><항 신설></u>	제15조(이사회 소집) ①~⑥ “ <u>현행과 같음</u> ” ⑦ <u>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u> <u><신설 2020.00.00.></u>	화상회의 운영 근거 조항 신설(코로나-19 등 유사사례 대비)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생략” 1.~12. ” 생략 “ 13.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u>4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u>현행과 같음</u> ” 1.~12. ” <u>현행과 같음</u> “ 13. 체육회 이사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협회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u>5년</u>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u><개정 2020.00.0.></u>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u><신설></u>	제47조의3(체육회의 평가) ① <u>협회는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u> ② <u>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정한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u> <u>[본조신설 2020.00.00.]</u>	협회 평가 근거 신설
<u><신설></u>	<u>부칙(2020. 00. 00.)</u> 제1조(시행일) <u>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u>	

나. 참석자 주요 발언

- 1) 대의원(전운기/서울): 정관 개정 세부내용에 이사회는 화상회의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총회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늘의 이 총회 운영이 적법한지 알고 싶음. 부칙 등에 경과규정이란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듦.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화상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임.
- 2) 의장(강수립): 적절한 지적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한 회의 실시임을 알아주시길 하는 바람. 위급한 시기(코로나19)인 만큼 서로의 배려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해를 바람.

- 3) 대의원(전운기/서울): 국무총리 훈령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이 듭.
- 4) 의장(강수립):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훈령은 나올 수 있음. 10인 이상.....
- 5) 대의원(전운기/서울): 아무리 훈령이라 할지라도 대한요트협회에서 가장 우선되는 규정은 정관임. 정관에 (화상회의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 훈령에 근거해서 화상회의를 실시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남. 본인이 제안하는 방안은 정관 부칙에 해당내용으로 하여금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임.
- 6) 의장(강수립): 부칙을 읽어보면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 7) 대의원(전운기/서울): 그것으로는 부족함.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이 규정을 정관 부칙에 달아야 할 것으로 봄.
- 8) 의장(강수립): 부칙 시행일이 그것을 의미...
- 9) 대의원(전운기/서울):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지, 시행일로는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것으로 봄. 아무쪼록, 본인의 의견을 조건으로 달아 안전을 통과시킨 후 법적 자문을 받으면 좋겠음.
- 10) 의장(강수립): 지금의 회의는 전염병 예방법 관련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비상사태 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부칙에 이사회를 시행한 날부터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부칙에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안전으로 삼고 기록에 남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유권해석을 받을 것. 부칙의 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후일 검토해볼 것. 우리가 하는 화상회의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9월~10월 확인 공문이 있었고 필요시 송부 예정. 서울시 회장님께서 이의한 부분은 기록으로 남겨놓을 예정.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 제시 요망. 화상의결에 절차상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해주시고 반대 의견도 말씀해주시길 바램. 의결 정족수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음. 8명 찬성으로 과반 수 이상이므로 안전은 통과됨. 그래도 계속 의견을 기다려보겠음. 현재 9명 찬성 표시. 과반 수 이상이므로 안전을 통과시킴.

※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6141(2020. 9. 18.): 「회원종목단체 총회(이사회) 개최 방식 관련 알림」

비대면 온라인 방식 총회 개최 안내

- 국무총리실에서 배포한 지침(2020.3월)에 따라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단체(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는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 함
- 다만, 상기 방식으로 총회(이사회)를 개최 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총회(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②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대의원 또는 이사임을 확인), ③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 함
- 단, **회원종목단체규정 제43조(재산의 관리)는 비대면회의 불가**
- 이 외에 총회 개최 및 의결 등과 관련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규정 준수 필요

다. 논의 결론: 원안 의결

(폐회선언: 14시 24분)

2020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출석 명부

□ 재적: 대의원 20명

□ 출석: 11명

2020. 12. 3.(목)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서울	대의원	전 윤 기	○	충남	대의원		
부산	대의원	하 영 재 (대 리)	○	전북	대의원		
대구	대의원	정 주 동	○	전남	대의원	강 병 석	○
광주	대의원			경북	대의원	김 창 수 (대 리)	○
대전	대의원			경남	대의원	노 성 진 (대 리)	○
울산	대의원			제주	대의원	오 용 덕	○
세종	대의원			레이저	대의원	채 회 상	○
경기	대의원			옵티미스트	대의원	이 현 승	○
강원	대의원			J24	대의원	최 흥 석	○
충북	대의원			카이트보딩	대의원	김 수 범	○

※ 출석은 아래의 출석 화면 캡처로 증빙

출석 사진 및 출석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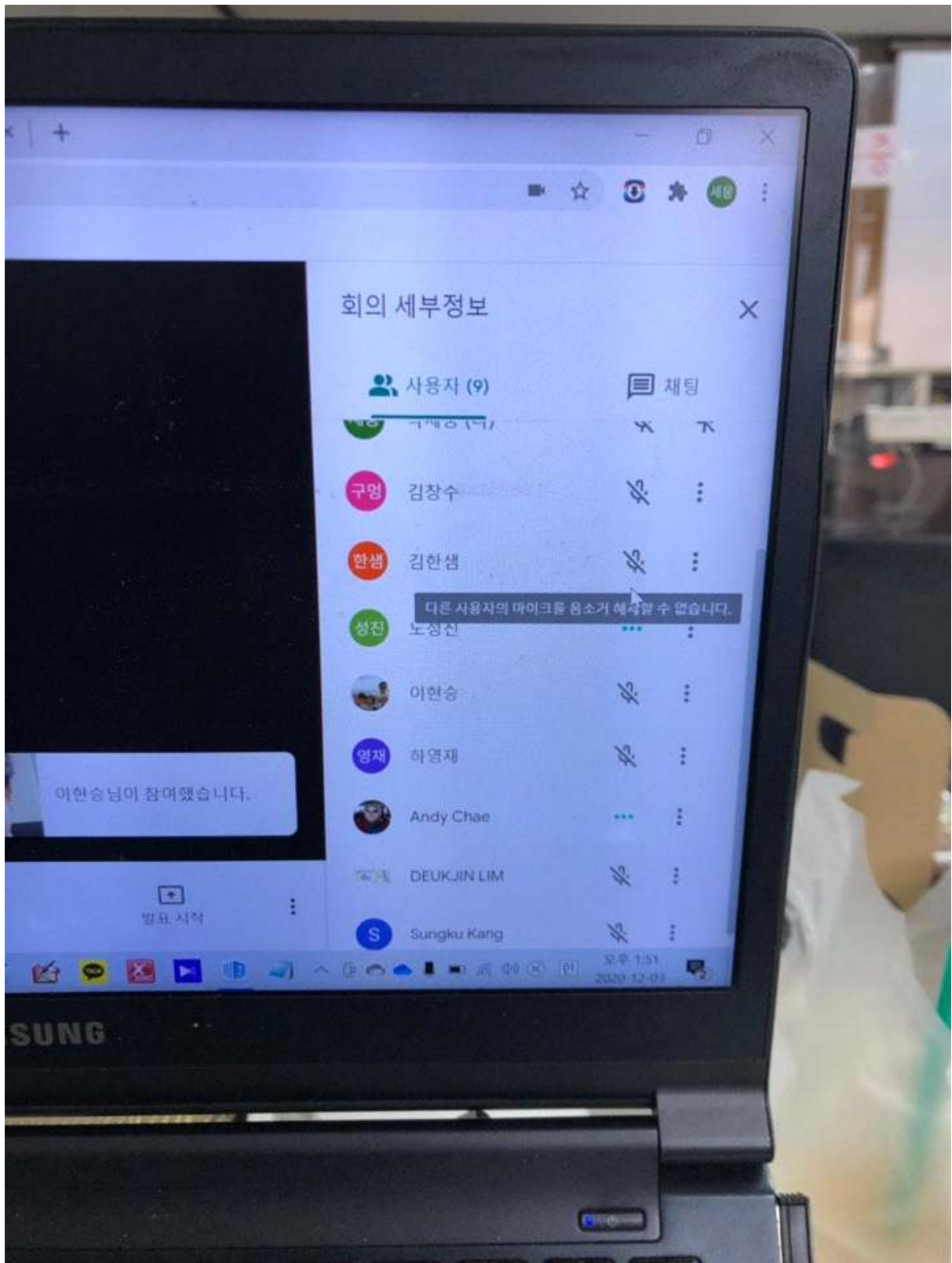


출석 사진 1(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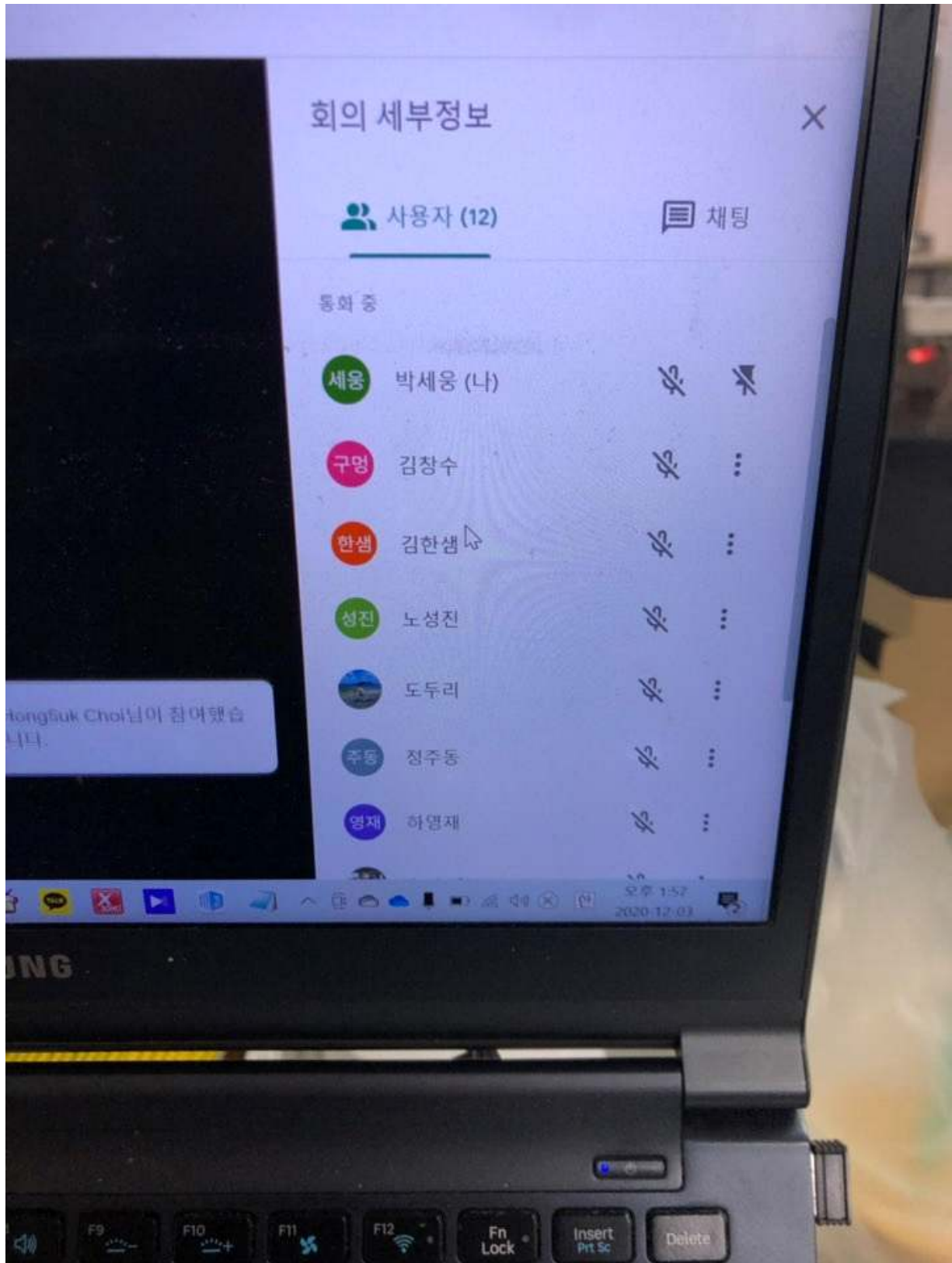
출석 사진 2(사무처장)

출석 사진 및 출석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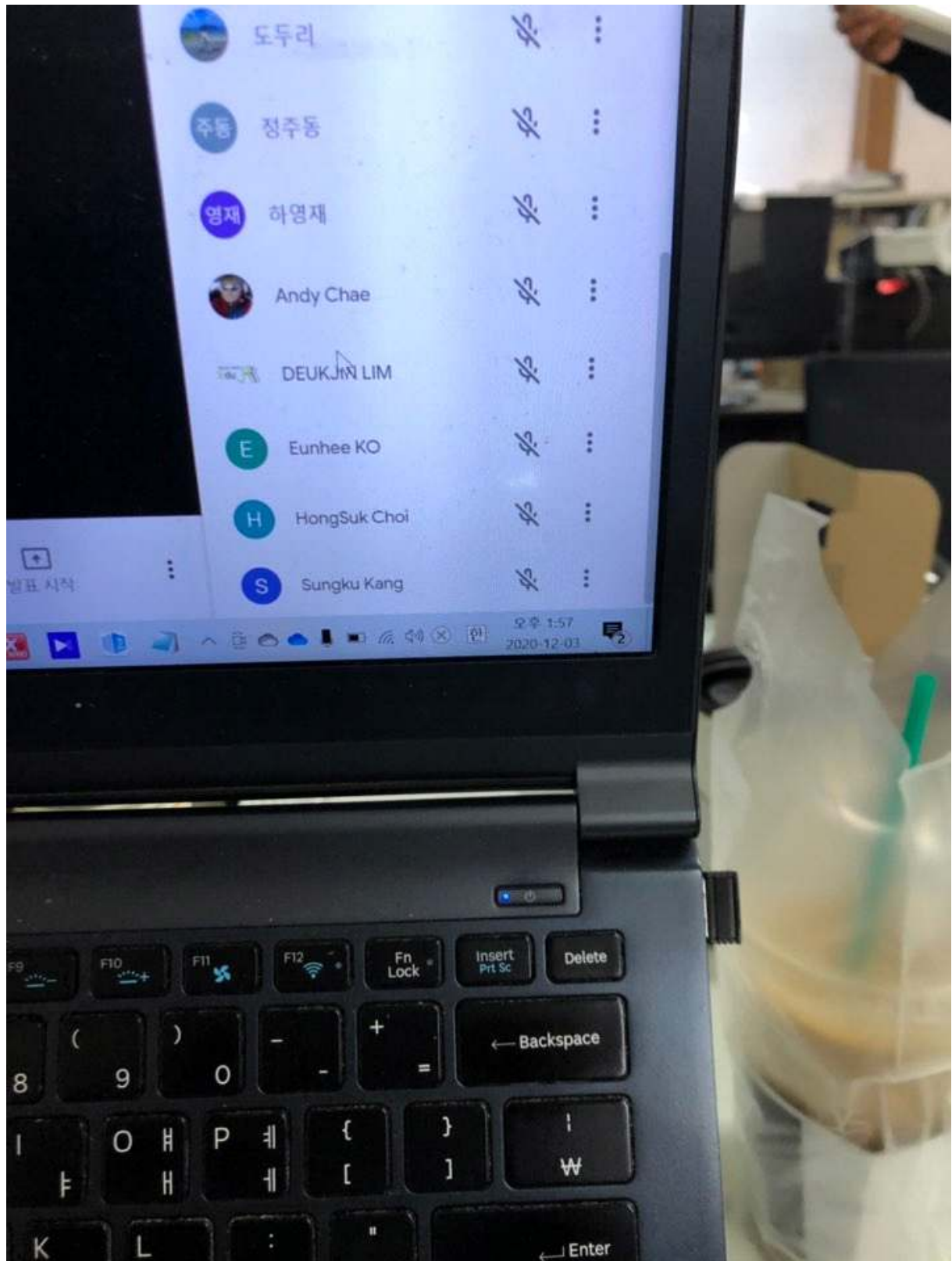
출석 화면 캡처 1(※ DEUKJIN LIM: 김수범(카이트보딩) 대의원)

출석 사진 및 출석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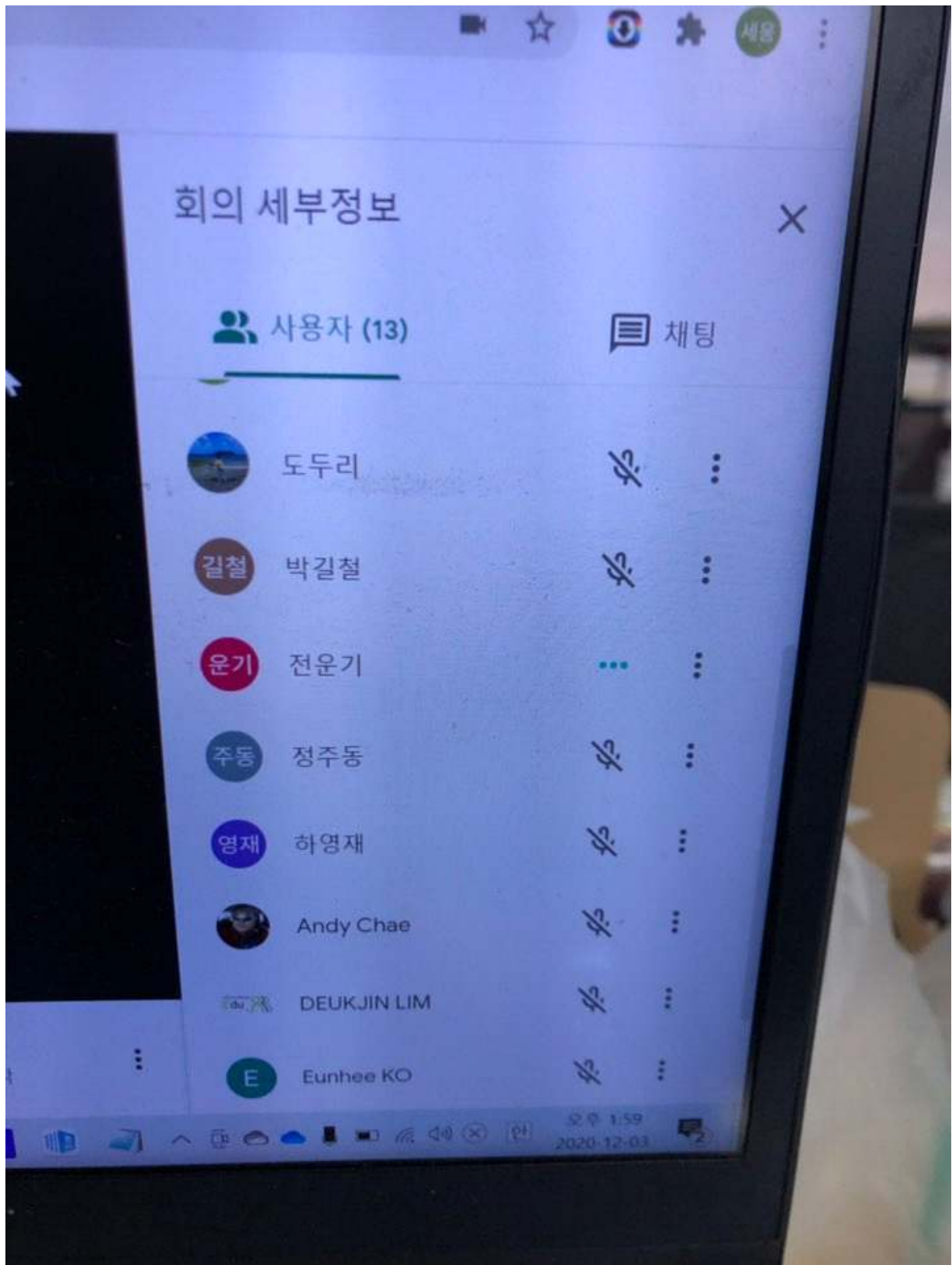


출석 화면 캡처 2

출석 사진 및 출석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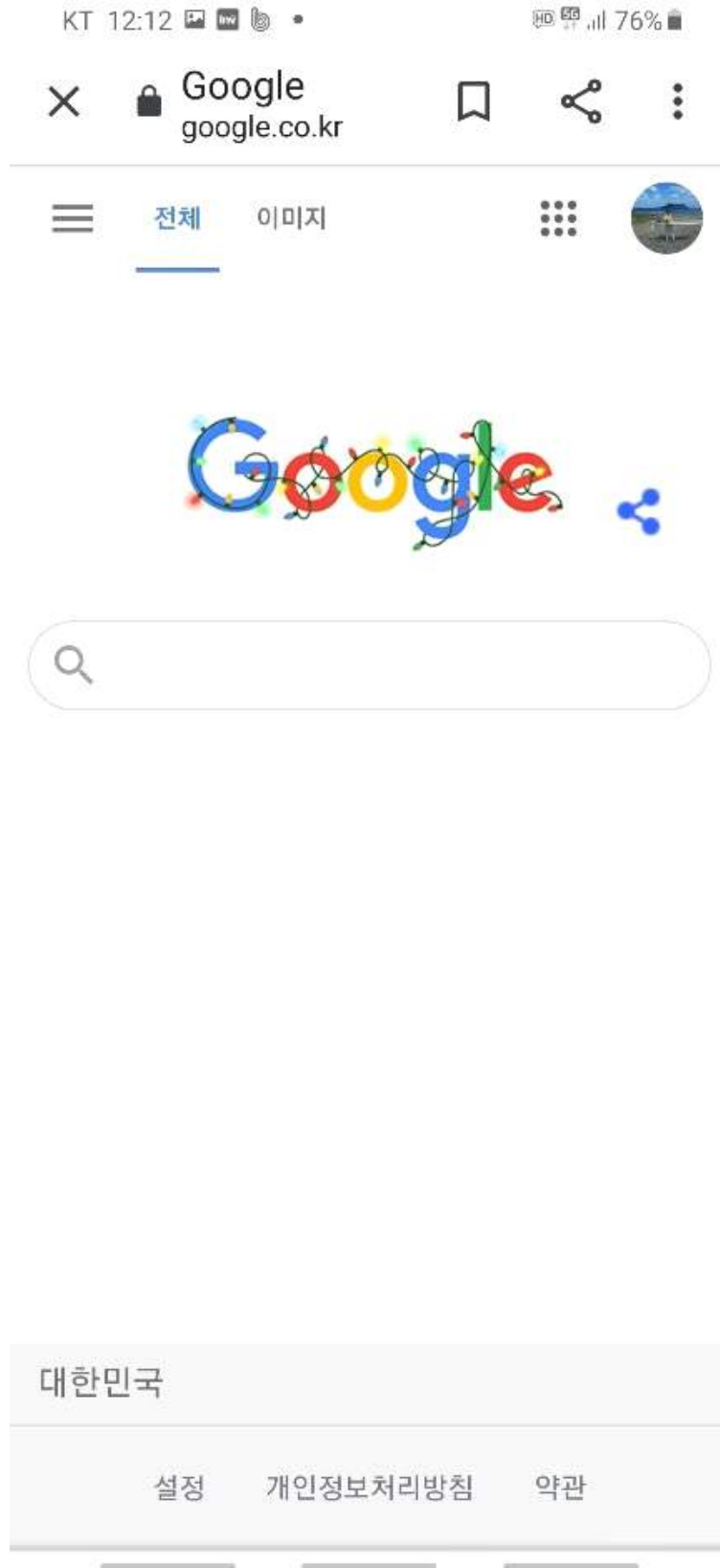


출석 사진 및 출석 화면 캡처



출석 화면 캡처 4(※ 박길철: 강병석(전남) 대의원)

출석 사진 및 출석 화면 캡처



출석 화면 캡처 5(도두리: 오용덕(제주) 대의원)